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14 선고 2018가단5538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4. F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김제식

변론 종결2019. 3. 26.

판결 선고2019. 5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,637,862원 및 그 중 54,352,307원에 대하여 2015. 10.

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,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1997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시효가 만료할 무렵 다시 시효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437호로 다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,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437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2.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

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 D, E, F이 보증을 선 시점은 1990. 7.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며,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.

피고 F은, 보증 당시 피고 E이 피고 F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올라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(뿐만 아니라 피고 F은 위 2008가단41437호 사건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않았다).

결국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조정현

별지